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의안 번호	14934
----------	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5. 12.

제안자 : 법제사법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연 번	의안명	대표발의자 (제출자)	발의일 (제출일)	심사경과
1	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제2202258호)	김영호의원 등 10인	2024.7.25.	• 제418회 국회(정기회) 제15차 전체회의(2024.11.4.) 상정/제안설명/검토보고/대체토론/소위원회 • 제418회 국회(정기회)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 (2024.11.26.)상정/축조심사 • 제429회 국회(정기회) 제6차 법안심사제1소위 (2025.11.20.)상정/축조심사 • 제429회 국회(정기회) 제8차 법안심사제1소위(2025.12.1.) 상정/축조심사/의결(대안반영폐기) • 제429회 국회(정기회) 제2차 안전조정위원회(2025. 12. 3) 상정/심사
2	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제2213155호)	김용민의원 등 10인	2025.9.22.	• 「국회법」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(2025.9.22.) • 제429회 국회(정기회)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 (2025.9.23.)상정/축조심사 • 제429회 국회(정기회) 제6차

연 번	의안명	대표발의자 (제출자)	발의일 (제출일)	심사경과
				법 안 심 사 제 1 소 위 (2025.11.20.)상정/축조심사 · 제429회 국회(정기회) 제8차 법 안 심 사 제 1 소 위 (2025.12.1.)상정/축조심사/의 결(대안반영 폐기) · 제429회 국회(정기회) 제 2차 안전조정위원회(2025. 12. 3) 상정/심사/의결

가. 제429회 국회(정기회) 제8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(2025.12.1.)는
이상 2건의 법률안의 취지와 내용을 통합·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
제안하기로 함.

나. 제429회 국회(정기회) 제16차 법제사법위원회(2025.12.3.)는 법안심사
제1소위원회로부터 심사·보고를 듣고 안전조정위원회로 회부함.

제429회 국회(정기회) 제2차 안전조정위원회(2025.12.3.)는 위 연번
2번의 김용민의원 대표발의 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
관한 법률」 일부개정법률안 1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
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.

다. 제429회 국회(정기회) 제16차 법제사법위원회(2025.12.3.)는 법안심사
안전조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위 1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
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대법원장 및 대법관, 검찰총장, 판사 및 검사 등은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

중립성 등이 요구되므로, 해당 직의 경우 본인이 범한 모든 범죄를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대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.

따라서, 대법원장 및 대법관, 검찰총장, 판사 및 검사의 직에 해당하는
경우 본인이 범한 모든범죄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할 수
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함(안 제2조제3호).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“말한다”를 “말하고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”로 하고,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“가족의”를 “제2조제1호 다목, 카목 및 파목의 직에 해당하는”으로, “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”를 “본인이”로, “죄에 한정한다”를 “모든 범죄를 말한다”로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20명”을 “40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적용례)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리된 사건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2. (생략) 3. “고위공직자범죄”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. 다만, <u>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.</u> 가. ~ 아. (생략) 4. 5. (생략) 제11조(그 밖의 직원) ① (생략)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의 수는 <u>20명</u> 이내로 한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--- ----- --- <u>말하고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. 다만, 제1호 다목, 카목 및 파목의 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범한 모든 범죄를 말한다.</u> 가. ~ 아. (현행과 같음) 4. 5. (현행과 같음) 제11조(그 밖의 직원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40명</u> -----.